

## 2017년 기본서 5차 개정판 보는 분들을 위한 추록

※ 2017년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행정자치부의 명칭이 행정안전부로 개정이 되었으니 기본서의 행정자치부는 모두 행정안전부로 고치십시오.

P.124

2. 해양경비안전본부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교체

<p>경찰공무원법</p> <p>제6조(임용권자) ①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p> <p>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2조(소속기관) ① 해양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교육원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둔다.</p> <p>② 해양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지방해양경찰청을 두고, 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서를 둔다.</p> <p>제4조(청장) 해양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p>
--

① 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고 경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② 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의 임용 및 임무규정은 ‘경찰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직무응원법’을 준용한다.

P.140

(3) 경과와 특기에 따른 구분을 경과에 따른 구분으로 변경

P.140

BOX안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조 아래와 같이 변경

<p>제3조(경과) ①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경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과는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게만 부여하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경과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일반경과</li> <li>2. 수사경과</li> <li>3. 보안경과</li> <li>4. 특수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 항공경과</li> <li>라. 정보통신경과</li> </ul> </li> </ol> <p>② 임용권자(제4조제1항에 따라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p>
---

임용제청권자[「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 경과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경과의 일부를 폐지 또는 병합하거나 신설할 수 있다.

⑤ 과별 직무의 종류 및 전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P.142

⑤ 특기 모두 삭제

P.148

BOX안 경찰공무원법 제4조 아래와 같이 변경

제4조(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경찰공무원의 인사(人事)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150

BOX안 경찰공무원법 제6조 아래와 같이 변경

제6조(임용권자) ①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②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③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또는 제3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P.153

④ 근속승진 아래와 같이 변경

④ 근속승진

- ㉠ 경찰청장은 해당 계급에서 다음의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을 경장, 경사, 경위, 경감으로 각각 근속승진임용할 수 있다.
  - ㉡ 순경을 경장으로 근속승진하려는 경우 - 해당 계급에서 4년 이상 근속자
  - ㉢ 경장을 경사로 근속승진하려는 경우 -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속자
  - ㉣ 경사를 경위로 근속승진하려는 경우 - 해당 계급에서 6년 6개월 이상 근속자
  - ㉤ 경위를 경감으로 근속승진하려는 경우 - 해당 계급에서 10년 이상 근속자
- ㉥ 근속승진한 경찰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간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P.172

참고 경찰청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아래와 같이 변경

<p>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치안총감 40만원, 치안정감~총경 30만원, 경정이하 20만원)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li> <li>②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li>③ 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li> <li>④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li> <li>⑤ 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li> </ul> <p>제15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공무원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li> <li>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li> <li>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li> </ul>
---

④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초과 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P.175

참고 경찰청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아래와 같이 변경

제16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공무원, 또는 경찰유관단체원으로서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아닌 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공무원, 또는 경찰유관단체원으로서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아닌 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금전차용(부동산대여) 신고서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P.176 부터 P.178의 내용 아래와 같이 교체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임용이나 파견 복귀 등이 있는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민간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표자나 임원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지속적인 만남 또는 연락 등으로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제5조의2(수사·단속 업무의 공정성 강화) ① 공무원은 수사·단속의 대상이 되는 업소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유형의 업소 관계자와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적 또는 사적으로 접촉한 경우 경찰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수사 중인 사건의 관계자(해당 사건의 처리와 법률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와 부적절한 사적접촉을 해서는 아니 되며, 소속 경찰관서 내에서만 접촉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조사 등 공무상 필요한 경우 외부

에서 접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수사서류 등 공문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소속 기관의 장등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의 가액 범위 내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P.182

(1)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설치 아래와 같이 변경

(1)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

①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 둔다.

②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경찰교육원, 경찰병원, 경찰서, 경찰기동대, 의무경찰대,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장, 경비합정,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에 둔다.

P. 182

(2) 징계위원회의 종류 BOX안 해양경비안전서를 해양경찰서로 변경

P. 266

(3)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②를 아래와 같이 변경

②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해당 청구서를 손실보상청구사건을 심의할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P. 267

(4)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을 아래와 같이 변경

①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설치한다.

P. 301

(3) 비밀관리부철의 보존 아래와 같이 변경

(3) 비밀관리부철의 보존

① 서약서철, 비밀접수증철, 비밀관리기록부,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 비밀열람기록전(철), 비밀대출부, 은 해당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후 5년간,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암호자재 점검기록부, 암호자재 증명서는 해당 암호자재 반납 또는 파기 후 5년간 각각 보존하여야 한다.

② 보존기간이 경과된 부철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P. 383

(5) 통고처분 내용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변경

P. 443

(2) 선거경비의 방침 ② 삭제

P.446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대책본부)를 둔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다만,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방사능 재난의 경우에는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이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P.447

3. 재난발생시 우리나라의 재난관리방식 ②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소방본부장을 소방청장으로 변경

② 행정안전부장관(중앙대책본부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총괄·조정한다.

※ 경호경비 파트에서 경호실장을 경호처장으로 변경

P.489

(1) 앞지르기 방법 ③ 삭제